

"세계를 한 곳에 미래를 한 눈에"

서울특별시

우편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 전화(02)3907-357 / 전승 362-6928

문서번호 수질 65461-250

시행일자 1995. 1.

(경유)

0232

수신내부결재

참



취급		시 장	
보존	영구		
부시장	호		
본부장	김기근	부시장	
차장	김기	하수국장	김기근
생산부장	홍	한강관리사업소장	김기근
		법무담당관	김기근
		협조	

제 목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1. 팔당하류 오염원 정비방안('94.10. 7)과 관련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부터 시계간 6.45 km 를 수도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경기도 지역은 환경부와 경기도에 협조요청하고자 합니다.

- 첨 부 : 1 공고(안) 1 부
 2 현황자료 1 부
 3 현황도면 2 부. 끝.

서울특별시

089

89

(제 2 안)

경 유 한강환경관리청장
수 신 환 경 부 장 관
참 조 상수원관리과장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보고 및 협조요청

1. 수도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27조에 의거
우리시의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별첨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 수도권의 발전에 따라 상수원 이용량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잠실
상류에 직접 영향권을 가지는 서울시계로부터 팔당댐에 이르는 구간도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야 실질적 상수원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공급을 위하여 서울시계로부터 팔당댐에 이르는 지역도 상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고문 사본 2 부
2. 관련도면 2 부. 끝.

(제 3 안)

수 신 총 무 처 장 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1. 우리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아래와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공 고

나. 게재건명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고

다. 근거법규 : 수도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 37조, 상수
원 관리규칙 6조

090

첨 부 : 공고문 사본 2 부. 끝. 

90

(제 4 안)

수 신 경 기 도 지 사

참 조 환경관리과장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조요청

1. 귀 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1100만 서울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우리시의 잠실수중보 상류에서부터 팔당댐에 이르는 한강에 각종 수상이용시설, 강변음식점과 숙박시설, 골프장 위락행위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될 분야니라 시민정서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선 우리시 지역을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팔당댐 하류의 수자원 이용은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식수원 확보를 위해 귀도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정 공고문 사본 1 부
2 도 면 1 부. 끝.

(제 5 안)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협조요청

1. 팔당하류 오염원 정비방안(시장방침 1906호 '94.10. 7)과 관련임.

2.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잠실수중보에서 우리시계간 한강변 6.45 km를 수도법 제 5조 규정 및 동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091 ~~43~~

91



공고하였으니 상수원 관리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른 관리에 협조를 바라며

3.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아래와 같은 금지 및 제한행위가 있는바 수상이용 시설과 육상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하수관망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 항

가. 보호구역내의 금지 및 제한(수도법 제 5조 3항)

○ 금지행위(수도법 시행령 제8조)

-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 행위
- 햄락, 야영, 취사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일
- 자동차 세차

○ 제한 또는 허가(수도법 제 5조 4항)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 변경.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형질 변경



첨 부 : 1 지정공고문 사본 1 부
2 도 면 1 부. 끝.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처 서울특별시(하수국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성동, 감동, 송파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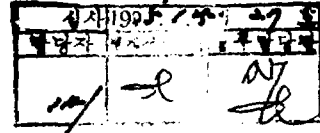
092 44

92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고



수도법 제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도법 제5조제2항·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상수원보호구역명칭 : 잠실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강동구 및 송파구의 잠실수중보 상류로부터 서울시계간 지역, 6.45 km

행정구역별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단위 m ²)			비 고
	계	육 지	수 면	
합 계	6,453,157	1,943,916	4,509,241	도시지역
성 동 구	1,969,259	234,891	1,734,368	
강 동 구	2,884,855	1,310,636	1,574,219	
송 파 구	1,599,043	398,389	1,200,654	

3. 상수도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1),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인천시 남구 도화1동), 성남시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223-1).

4. 기 타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면 생략

093 +

9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	서울특별시	지정일자	'95. 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지정면적	6,453.157㎡	수도사업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외 3		
국 토 이용 계획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취수시설	위 치	암사취수장 : 강동구 암사동 산 10 구의취수장 : 성동구 광장동 18 자양취수장 : 성동구 자양동 701 풍납취수장 : 강동구 풍납동 388-1 인천취수장 : 강동구 풍납동 419 성남취수장 : 강동구 풍납동 310-3 수자원공사 일산취수장 : 강동구 자양동 701			
	취 수 량	481만㎡/일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범 위					
행정구역별	상 수 원 보 호 구 역 면 적 (㎡)				
		계	육 지	수 면	
계	6,453,157	1,943,916	시정	4,509,241	
성 동 구	1,969,259	234,891		1,734,368	
강 동 구	2,884,855	1,310,636		1,574,219	
송 파 구	1,599,043	398,389		1,200,654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에 수상 이용 시설과 위락행위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우려와 시민정서를 크게 해치므로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시계외 지역은 환경처,경기도에 협조 요청코자 함

□ 현 황

▷ 원수취수

- 팔당댐 : 548만톤/일(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서울시 : 175만톤/일, 경기,인천 : 373만톤)
- 잠실수중보 상류
 - 취수량 및 계획량

구분	계	서울시					인천	경기도		
		소계	암사	구의	자양	풍납		소계	성남	일산
'94	481	444 92.3%	132	113	132	67	25 5.2%	10 2.1%	4	6
'96 계획	558	477 85.4%	162	113	132	70	50 8.9%	31 5.5%	16	15

• 남양주 1.6, 하남시 0.5만톤

▷ 오염원

- 수상이용시설
 - 수상업소, 요트장, 수상스키, 낚시행위 등
- 왕숙천,잠자못, 덕풍천등의 오수 유입
- 강변음식점
- 수상이용시설 현황

업 체 명	오 수	분 뇨	접 용 허 가
(주)쌍밤울	분류하수관이송	이동식화장실	고수부지 6,845㎡ '96.11.27
삼덕수상레저	"	수세식(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까지
(주)삼세룡	"	"	고수부지 6,268㎡ '97.3.26
골드관광	"	"	고수부지 987㎡ '97.9.17
수상법당	차량수거	이동식화장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까지

* 선박, 승선대, 바지선 점용허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까지

- 분뇨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자에 위탁 처리
 - 육상 부대시설의 오수처리 시설이 미비
 - 민간인 요트,서핑등 이용으로 입수 및 목욕행위
 - 취수장 수역으로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임
- 수질오염원 부하량(시계내)

명 칭	유 량 (㎡/일)	오염도(BOD) (ppm)	BOD부하 (kg/일)	한강본류의 BOD영향
팔 당 댐	17,280,000	1.2	20,739	-
고 덕 천	2,400	22.5	57.8	0.003
천호대교	12,600	43.9	553	0.032
구의유수지	45,000	5.1	230	0.013

* 성내천은 하수 완전 차집(탄천하수처리장)으로 건천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인천시 : 잠실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리에 적극 찬성함
- 경기도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동의하나 경기도는 각종 제한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됨.
경기도 자체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곤란하며 하수처리장 건설비 지원, 주민지원사업확대 등 정부적 차원에서 검토조정이 필요함.
- 한강관리사업소 : 수상이용시설 점용허가연장 불허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예상
- 치수과 : 강동구 하일동 일명 가래여울 마을은 하천구역제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보류요청
- 성동, 송파, 강동구청 : 의견없음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범위

- 잠실수중보 - 시계간(제방안 중 강동구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잠정제외)
면적 6.45㎢(수면적 4.51㎢, 육지면적 1.94㎢)
- 제방 밖은 하수도 정비가 되어있으며 발생하수는 분류 하수관으로 차집하여 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중임
- 가래여울 마을 잠정제외 사유
 - 강동구 하일동 145번지 일대 가래여울마을은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있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하천구역 해제여부를 검토 용역중임 (용역기간 : '94. 6 - '95. 3, 발주기관 : 건설부, 용역비 : 620백만원)
 - 용역결과에 따라 집단이주보상, 또는 하천구역해제가 결정되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잠정 제외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하고자 함(현황 별첨)

□ 문제점

- 수상시설 철거와 인허가 제한으로 시설물 보상 요구 예상
- 수상스키, 모터보트등 수상 스포츠 행위가 금지되므로 시민휴식공간 축소
- 우리시는 분류하수관로 설치로 제방안쪽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효과가 크나 경기도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하고 자연취락이 분산되어 구역지정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주민,의회 등의 집단민원이 예상됨

□ 향후 추진

- 잠실수증보상류 수상이용시설의 점용허가불허 및 타지역 이전
- 경기도,환경부에 경기도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조기지정 및 조정 요청
-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제한행위 위반 지도단속 실시
 - 공익근무요원 배치 즉시 단속반 편성 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 20개소
- 지적고시(공고후 6개월내)

200. 2. 13
지장

□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 및 제한행위

1. 수질오염물질, 특정유해물질, 유독물, 특정유독물,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수도법 제 5조 3항 1호)
2. 금지행위(수도법 시행령 제 8조)
 - 오수, 분뇨,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물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 행위
 - 행락, 야영, 취사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일
 - 자동차 세차
3. 제한행위(수도법 제5조 제4항)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 변경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등 형질 변경

시장

099 A

99

잠실수중보상류 오염원 현황

잠실수중보 상류 - 팔당댐 하류

'95. 1 현재

(단위 : 천톤)

구 분	하수발생 및 처리량		수상스키	요트 및 보트장	강변음식점
	발생량	처리량			
계	160	66	6	3	53
하남시	40	16	1	-	31
미금시	18	3	-	-	3
남양주군	53	12	5	3	19
구리시	49	35	0	0	0

팔당호 주변 및 상류지역

'95. 1 현재

구 분	수 계	계	음식점	호텔	숙박	골프장	비 고
계		6,936	6,311(44)	22	574	29	97천톤/일
남양주군	북한강	841	754(20)	4	82	1	9천톤/일
광주군	경안천	1,203	1,153(13)	1	46	3	9천톤/일
양평군	남한강	844	738(1)	3	103	.	5천톤/일
용인군	경안천	1,520	1,414(0)	.	90	16개장	40천톤/일
여주군	남한강	556	478(0)	.	72	6	5천톤/일
가평군	북한강	895	799(0)	10	86	.	5천톤/일
이천군	남한강	1,066	965(0)	4	95	2	10천톤/일
하남시	한 강	11	(10)	.	.	1	14천톤/일

• ()는 상수원보호구역내입.

□ 가래여울 마을 현황

- 강동구 하일동 145번지 일대로 율림피대로 안쪽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하천구역해제, 건물증개축, 토지거래 허용등 장기 민원제기
 - 위치 : 강동구 하일동 1동(일명 가래여울)
 - 면적 : 3,500㎡(주거지역)
 - 주택 : 30동(부속건물 포함 122동)
 - 허가 17동, 무허가 13동
 - 인구 : 93세대 343명(세입자 66세대 210명)
 - 음식점 : 4개소(무허가 3개소)
 - 지형 : EL18.1m~19.5m (한강계획홍수위 EL19.5m와 비슷함)
- 마을이 강쪽에 있었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 유실되어 현위치로 집단이주한 남평 문씨 집성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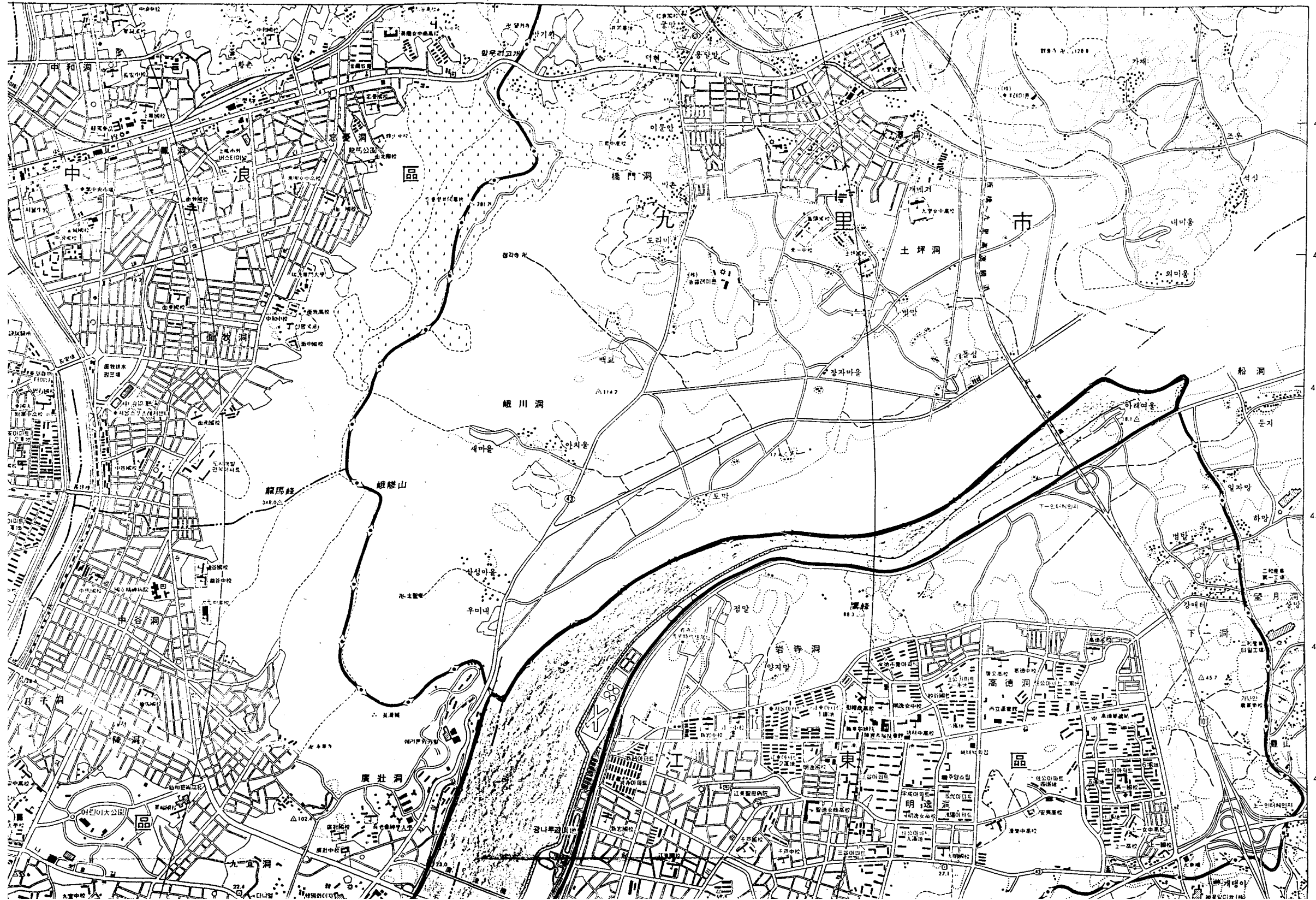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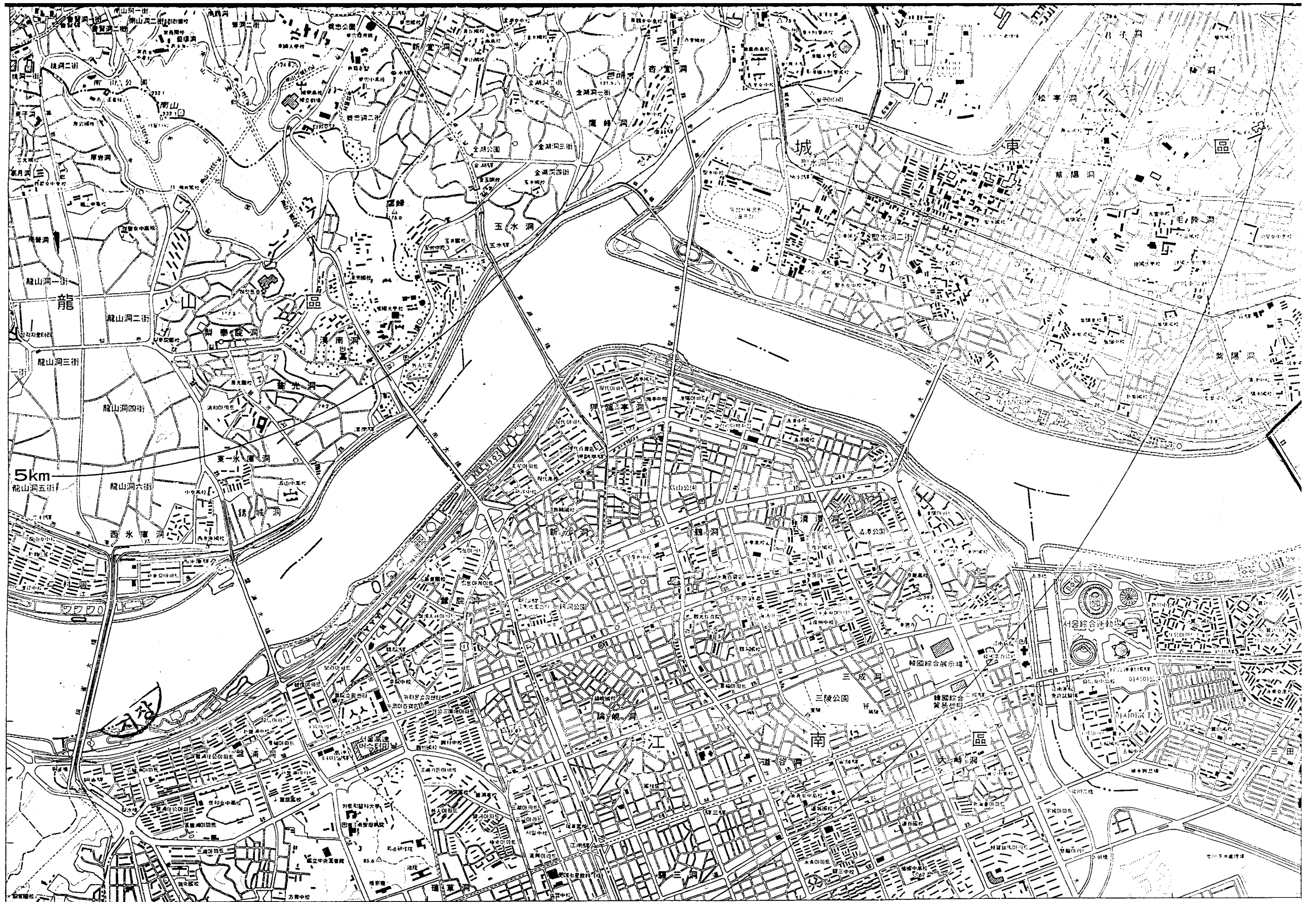
-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 및 강변도로 축조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상 불이익 감수
- '91 이후 하천구역 해제민원 지속적 제출
- '93년 건설부 및 서울시 대책회의에서 수리학적 검토후 해제여부를 결정 결정키로 용역시행중(용역비 6억2천만원)
- 현재 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심정호 설치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화에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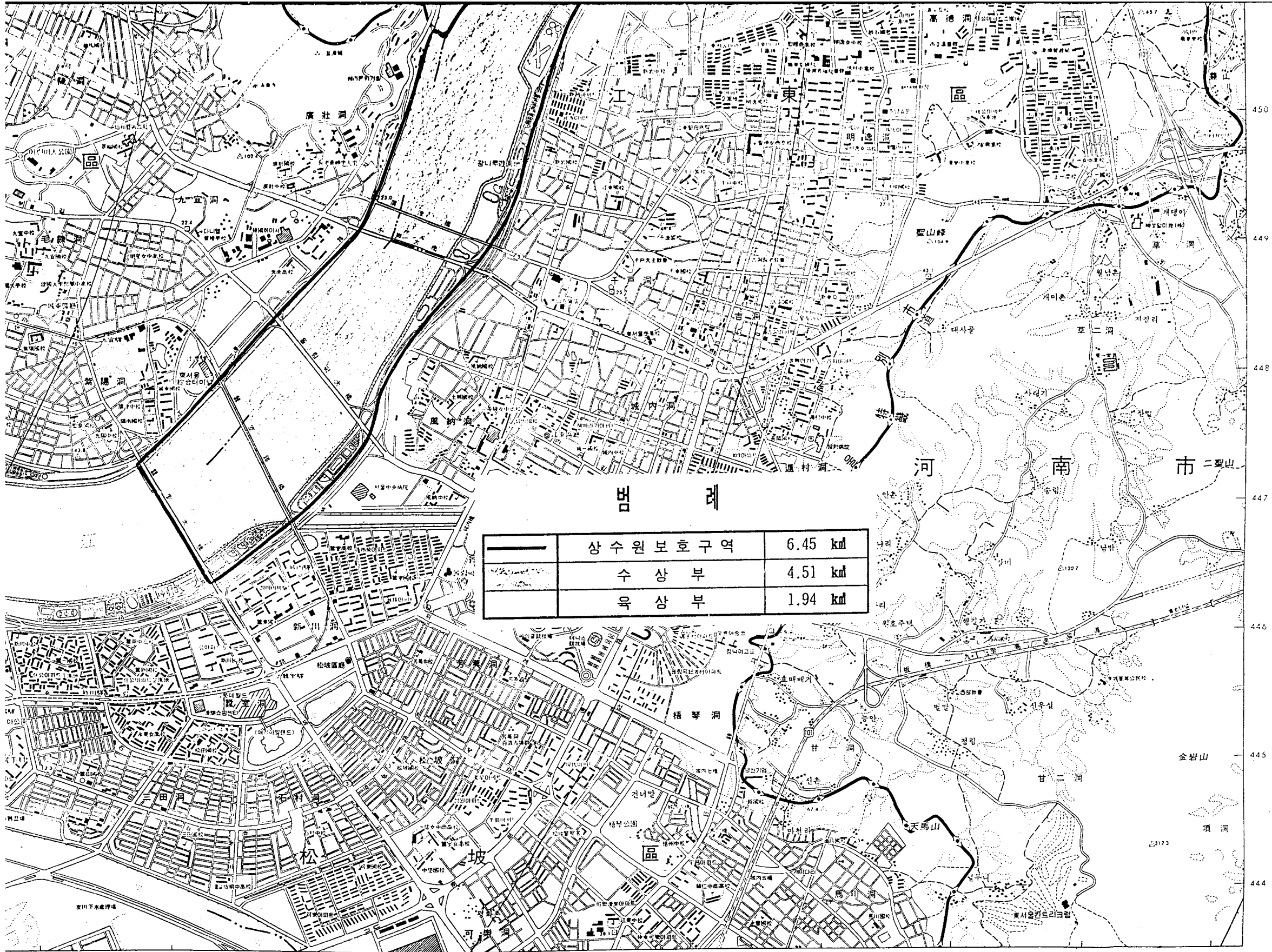
○ 대책

- 하천구역 해제검토용역결과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 하수관망을 정비하여 생활오수를 분류하수관로에 차집, 차집전이라도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무허가 음식점은 폐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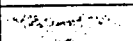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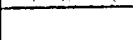








범례

	상수원보호구역	6.45 km ²
	수상부	4.51 km ²
	육상부	1.94 km ²

0 意 見

露室 水中狀 上流 水上利用 施設 5個 業體 (수상법당 1척 포함)는
上水源 保護區域 指定後 6個月間 移轉期間 許容토록 建議

事 由

4個業體는 서울市에서 '85.3 ~ 9 漢江水上利用 民間事業者를 公募,
事業者 選定하였고 水上法堂은 '86.11 設置承認 하였는 바, 이중 3個
業體는 水上 大型 遊船場을 設置하였고 이중 2個業體는 遊船場에 飲食店
營業 許可를 받아 營業中이므로 '95年 許可期間이 '95.1.1부터 上水源
保護區域 指定日까지로 期間 設定하였지만 移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 民願을 最小化 하고자 함

103 13
시장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실

106
가

103